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13.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435 등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048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435	20090702	20210113	거창군 가조면과 함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74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278-15	20090702	20210113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955-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빼제로 57-116	20091228	20210113	고제면에 위치한 빼제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국농소2길 47	20090401	20210113	임진왜란 때 대사헌 위가 전사하고 그 후손이 나라에서 낙향해 귀농하였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59-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2길 195	20090401	20210113	양기,음기를 텃골이라한데서 붙여진 법정리명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21-1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3길 21	20090401	20210113	행정구역명 마상리가 반영된 세번째 도로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5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2길 53	20090401	20210113	양지바른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9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갈지길 60	20190919	20210113	갈지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제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3.

거 창 군 수

- 1.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공고기간 : 2021.01.13.~ 2021.01.28.(15일간)
- 3.대상차량

순번	차량번호	차명	모델연도	운행정지사유	운행정지일자
1	11머3293	모닝	2018	기타	2021. 1. 8.

4.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였으며, 해당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수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11.

거 창 군 수

- 1.공고명칭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 2.공고기간 : 2021.01.11.~ 2021.01.25.(14일간)
- 3.공시송달대상

차량번호	구분	성명	주소	판결선고일	판결확정일
경남82아4733	양도인	유한회사 대*운*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	2019. 8. 27.	2019. 11. 21.
	양수인	이*옥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		

4.공시송달내용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알리오니 양수인께서는 2021년 1월 25일까지 이전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자동차등록령」 제 27조에 따라 강제 이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제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3.

거 창 군 수

- 1.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공고기간 : 2021.01.13.~ 2021.01.28.(15일간)
- 3.대상차량

순번	차량번호	차명	모델연도	운행정지사유	운행정지일자
1	68두0994	허머 H2	2005	기타	2021. 1. 13.

4.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였으며, 해당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